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kbs7722@korea.kr
- 팩스 : (044) 202-396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5/3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30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단법인 울산일자리재단
2. 대표자: 김노경
3. 소재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4. 설립허가일: 2020. 3. 11.
5. 설립목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안정,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3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양구조안전기술(정광량) ② 동서피씨씨(주)(정장원)
③ 삼표피앤씨(주)(정인철)

나. 전화번호 : ① 02-549-3744 ② 02-489-4256 ③ 02-6270-5218

2. 명칭 : 하이브리드 프리스트레스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Hybrid Prestressed Precast Concrete Method)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건축 / 철근콘크리트 / PC(Precast Concrete)

<기술의 요지>

하이브리드 프리스트레스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Hybrid Prestressed Precast Concrete, 이하 HPPC)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 반입하여 단순한 조립작업만으로 완성하는 프리캐스트(PC) 공법에, 부재 내부에 배치된 강연선의 긴장작업을 통해 부재 단면에 압축력을 도입하는 포스트텐션(PT) 공법을 혼합하여 골조 시스템 전체의 일체성과 더불어 내구성능 및 구조성능을 향상시킨 복합화 공법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HPPC 공법)은 HPPC 보, 기둥 부재에 쉬스관을 매립하여 제작한 후, 조립 시 길이 방향 중간부에 일정 길이만큼 중공부가 형성되어 있는 HPPC 보를 HPPC 기둥의 측면에 위치된 코벨부에 거치하고 쉬스관에 강연선을 관통시켜 프리스트레스트를 도입함으로써 보-기둥 접합부를 압착시킨 공법이며, 골조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4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